2019년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7. 30.(화요일), 11:00

o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2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372건(안건번호 제2019-81459호~8390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81459호 자막공유 사이트 내 자막파일 게시물 1건은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자막이 아닌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이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81460호~81469호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제공한 게시물 38건은 한 화 전체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하되, 심의시점 현재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81470호 판매 중인 소설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에서 제공한 게시물 1건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81471호 뮤지컬 음원 교환을 요청하는 게시물 1건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331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3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2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81459호~8390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372건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1459호는 권리자로부터 신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자막공유사이트 이용자가 호주 영화의 한글자막 파일(smi)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게시자가 쓴 글을 보면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파일임을 알 수 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145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자막을 공유하는 이유는 취미생활이라기 보다는 불법 복제한 영상과 결합하여 이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영화 자막파일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81459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1460호~8146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안건번호 제2019-81463호~81469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

2019-81460호~81462호 게시물은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약관을 근거로 접근 제한 조치를 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의 전송이 중단되어 있음
(민원인의 신고 내용,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1470호는 민원인이 권리자로부터 신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건으로, 현재 콘텐츠 플랫폼에서 유료로 판매 중인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7월 말 단행본으로 출판 예정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1460호~81469호, 제2019-8147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현재 전송 중단된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고 나머지는 시정권고 가결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A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81463호~81469호, 제2019-81470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19-81460호~81462호는 심의일 현재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중단되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 이용자가 뮤지컬 OST 음원을 교환하자는 취지의 게

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화면을 제시하면서)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있고,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법복제물등의 전송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147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명백히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비밀댓글에 대한 답을 받았거나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제공 받았다면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없음

- B 위원 : 부결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불법복제물등'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전송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여야 하는데, 음원을 서로 교환하자고 유도하는 내용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A 위원 : 뮤지컬 음원 교환을 유도하는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는 등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

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81471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1472호~8390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81472호~8390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A 위원 :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영상물과 함께 자막이 제공되고 있는데 자막의 출처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한글 자막 뒤에 남미 쪽 언어의 자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토대로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알라딘 (2019)'의 경우 대부분의 복제물이 "○○○"라는 사행성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임
(접속차단 된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한 상태임

- A 위원 : 모두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해당 저작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하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81472호~8390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81471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19-81459호~81470호, 제2019-81472호~83907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6.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